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단501482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김연정, 김제헌, 임승현, 추은혜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3. 29.

판 결 선 고 2021. 4. 28.

주 문

1.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피고와 C 사이의 2015. 3. 16.자 증여계약의 취소 청구 부분과 46,404,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2015. 3. 16.자 46,404,100원의 증여계약과 2015. 3.

17.자 14,0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0,404,1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3,379,175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28684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5. 3. 10.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그 이후 원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재차 C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58132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12. 'C는 원고에게 48,040,070원 및 그중 8,352,595원에 대하여는 2010.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5. 1.부터 2005. 1. 25.까지는 연 19%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2. 27. 확정되었다.

나. C는 2015. 3. 17. 원고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① 생략), 이하 '(계좌번호 ① 생략)'라 한다)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2015. 3. 17. 무렵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피고와 C 사이의 2015. 3. 16.자 증여계약의 취소 청구 부분과 46,404,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원고는, 원고가 C에 대하여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C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3. 1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46,404,100원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6,404,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때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과 관련하여 한 주장 내지 청구는 아래와 같음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2020. 1. 15. 제출한 이 사건 소장을 통해 C가 2015. 6. 1.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2) 원고는 2020. 2. 20.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C가 2015. 3. 17. 피고에게 1,400만 원을 증여했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1,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3) 원고는 2020. 11. 4.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C가 피고에게, 2015. 3. 16. 46,404,100원을, 2015. 3. 17. 14,000,000원을 각 증여했다고 주장하면서, 위 각 증여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으로 60,404,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4) 원고는 2021. 3. 22. 제출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위 2020.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의 주장 및 청구와 동일한 주장 및 청구를 하였다(다만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채권자대위에 따른 금전지급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변경하였다).

다. 판단

원고가 2020. 1. 15.자 소장 및 2020. 2.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에서 취소 대상으로 삼은 증여계약은 2015. 6. 1.자 1,000만 원의 증여계약과 2015. 3. 17.자 1,400만 원의 증여계약인 반면, 2020. 11. 4.자 및 2021. 3. 2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 새로이

취소 대상으로 삼은 증여계약은 2015. 3. 16.자 46,404,100원의 증여계약인바, 원고가 새롭게 취소를 구하는 2015. 3. 16.자 증여계약은 기존에 취소를 구하던 2015. 6. 1.자 증여계약, 2015. 3. 17.자 증여계약과 비교할 때 법률행위일자, 그 증여금액이 상이한 점에 비추어 동일한 소송물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2015. 3. 16.자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의 제척기간 준수여부는 그에 대한 주장이 처음으로 이루어진 2020.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접수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 한다. 그런데, 2015. 3. 16.자 증여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는 증여계약일인 2015. 3. 16.로부터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제척기간인 5년이 경과한 이후인 2020. 11.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제기되었으므로,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제척기간이 도과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와 C 사이의 2015. 3. 17.자 증여계약 체결 여부

C가 2015. 3. 17. 원고 명의의 (계좌번호 ①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9호증, 을 제3, 4, 11,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E 화성대리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피고는 1992년생으로 위 송금 당시 만 22세의 어린 나이로 F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었던 반면, C는 E 화성대리점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점, (계좌번호 ① 생략)의 사용내역을 보면 회사 근무 시간인 낮 시간대에 주유소에서 또는 피고의 근무 장소와 무관한 장소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한 내용이 아주 많이 발견되는 점, 또한 위 (계좌번호 ① 생략)의 이체 내지 입금 내역을 보면, G 등 법인과 거래내역이 있고, 적요란에 '해약' 등이 기재된 것이 있으며, 다수의 개인으로부터 입금 내지 지급내역이 수시로 발견되고 있는데, 이는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피고보다 자동차 대리점에서 근무하는 C의 거래로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는 점, 원고도 (계좌번호 ① 생략)는 C가 실제 사용하던 계좌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계좌번호 ① 생략)는 그 명의만 피고로 되어 있을 뿐 C가 실제 사용하던 계좌라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C가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 ① 생략)로 1,400만 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C가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C와 피고 사이의 2015. 3. 17.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소결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2015. 3. 17.자 증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는 무자력자인 C가 피고와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약정을 맺었고,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피고 명의로 명의신탁약정 체결사실을 모르는 주식회사 H와 사이에 화성시 I아파트 J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는데, C는 위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으로 원고의 채권액 93,379,175원을 초과하는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C를 대위한 원고에게 위 93,379,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C와 피고 사이에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

앞서 거시한 각 증거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와 K(피고의 모친이자 C의 배우자)은 2013. 5. 31. 주식회사 H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304,300,000원에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 그 후 주식회사 H, K 및 피고는 2015. 3. 6. 위 분양계약의 K의 수분양자 지위를 피고가 승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C는 본인이 실제 사용하던 피고 명의의 (계좌번호 ① 생략)에서 피고 명의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② 생략), 이하 '(계좌번호 ② 생략)'라 한다)로 돈을 송금하였고, 위와 같이 (계좌번호 ② 생략)에 돈이 입금되자 그 돈이 다시 이 사건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분양자에게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C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서가 작성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대금이 3억 430만 원인데, 그 중 2억 1,000만 원은 피고가 본인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지급되었고, 피고가 그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 2억 1,000만 원 외에 일부 중도금이 피고 명의의 적금 계좌를 해지한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2, 3년 전인 2010. 10. 20.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F 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어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 보이는 점, 경험칙에 비추어 자식이 그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그 매수자금을 증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

C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의 주위적 청구 부분 중 피고와 C 사이의 2015. 3. 16.자 증여계약의 취소 청구 부분과 46,404,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영